

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審 査 報 告 書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: 2009. 3. 5.
- 나. 제안자 : 수원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9. 3.11.
- 라. 상정일자 : 2009. 3.16.

2. 提案說明要旨(제안설명 : 경제통상국장 김형복)

가. 제안사유

-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부진, 수출급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의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융자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어 융자기간 연장이 필요함.

나. 주요골자

- 융자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 (안 제12조)
- 융자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 (안 제16조제5항)
- 기타 용어 순화·정리 및 부서 명칭 변경 등

3. 檢討報告要旨(검토보고 : 전문위원 조기동)

- 본 조례안은 2009. 3월 4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, 제261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.
- 최근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% 하락하고, 재고율도 2008년 7월 106.4% 에서 12월 129.4%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.

- 우리 시 관내 966개 중소기업 또한,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,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은행과의 재협약시 기업체 자금난 완화 및 적극적인 융자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취급은행을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이자차액보전금도 2%에서 3%로 인상 조치하였음.
- 이러한 여건속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은 기업들이 어려운 기업자금 사정과 높은 외환율로 인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, 금번 상정된 조례내용에 상환금 부담률 감소를 위한 연장건이 개정의 주목적임.
- 이러한 시기에 타 자치단체들도 중소기업,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신용보증을 통한 긴급자금을 융자·지원해 주고,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조금이나마 해결시키고자 상환연장 및 금리인하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는바,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, 고용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이러한 경제여건을 감안한 필요 개정안으로 판단되어,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향후 이 조례가 개정된 후 수원시 관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하여,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기를 희망함.

4. 審査結果

- 이의없이 원안가결